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4.21 (화) 10:30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, 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 등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특별상 지원근거 마련(안 제2조)

나. 대상후보자의 선정기준 변경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도내 중소기업의

신기술 개발, 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 등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, 시행상 제기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과 운영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